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 · 김혁황 · 금혜윤

Trade and Investment Study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 · 김혁황 · 금혜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기발호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인쇄일 2011년 12월 20일

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주)범신사 ☎ 02-720-978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304-9 94320

978-89-322-2112-0(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김혁황·금혜윤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차례

| | |
|-----------------------------|----|
| 국문요약 | 3 |
| ----- | |
| 제1장 서론 | 7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7 |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9 |
|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 14 |
|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 14 |
| 2. 한·칠레 FTA | 16 |
| 3. 한·싱가포르 FTA | 21 |
| 4. 한·EFTA FTA | 26 |
| 5. 한·ASEAN FTA | 31 |
| 6. 소결 | 36 |
|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 38 |
|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 38 |
| 2. FTA 관세율의 변화 | 40 |
| 3. FTA 활용률 | 48 |
| 4. 소결 | 53 |
|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55 |
| 제5장 결론 | 62 |
| 참고문헌 | 66 |
| Executive Summary | 68 |

표 차례

| | | |
|---------|-------------------------------|----|
| 표 1-1. | 주요국에 대한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8 |
| 표 1-2.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9 |
| 표 2-1. | 한·칠레 FTA 추진 경과 | 17 |
| 표 2-2. | 한국의 대칠레 TSI | 19 |
| 표 2-3. | 한국의 대칠레 MCA | 21 |
| 표 2-4. | 한·싱가포르 FTA 추진 경과 | 22 |
| 표 2-5. | 한국의 대싱가포르 TSI | 24 |
| 표 2-6. | 한국의 대싱가포르 MCA | 25 |
| 표 2-7. | 한·EFTA FTA 추진 경과 | 27 |
| 표 2-8. | 한국의 대EFTA TSI | 29 |
| 표 2-9. | 한국의 대EFTA MCA | 30 |
| 표 2-10. | 한·ASEAN FTA 추진 경과 | 32 |
| 표 2-11. | 한국의 대ASEAN TSI | 34 |
| 표 2-12. | 한국의 대ASEAN MCA | 35 |
| 표 3-1. |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 | 41 |
| 표 3-2. | 칠레의 대한민국 관세율 | 42 |
| 표 3-3. |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 | 43 |
| 표 3-4. | 한국의 대EFTA 관세율 | 44 |
| 표 3-5. | EFTA의 대한민국 관세율 | 45 |
| 표 3-6. | 한국의 대ASEAN 관세율 | 46 |
| 표 3-7. | ASEAN의 대한민국 관세율 | 48 |
| 표 3-8. | 한국의 칠레 FTA 활용률 | 50 |
| 표 3-9. | 한국의 싱가포르 FTA 활용률 | 51 |
| 표 3-10. | 한국의 EFTA, ASEAN FTA 활용률 | 52 |
| 표 4-1. | 상품경쟁력 분석: 2002~09년 | 58 |
| 표 4-2. | 상품경쟁력 분석: FTA 발효 이후 | 6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World Bank의 WDI 자료에 의하면 [표 1-1]과 같이 전 세계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2009년 현재 49.7%로 2008년 59.2%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1-1]에서 특이한 점은 한국과 EU의 비중이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2008년 비중은 10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한국경제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대외의존도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대중국 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가 좌우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국가와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표 1-1. 주요국에 대한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단위: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중국 | 43.1 | 47.7 | 56.9 | 65.4 | 68.6 | 70.6 | 68.0 | 62.2 | 49.0 |
| 일본 | 20.5 | 21.4 | 22.4 | 24.7 | 27.3 | 31.0 | 33.6 | 34.9 | 25.0 |
| 한국 | 69.2 | 64.8 | 68.5 | 77.6 | 75.8 | 78.0 | 82.3 | 107.2 | 95.7 |
| EU | 70.8 | 68.4 | 67.1 | 69.7 | 72.9 | 77.9 | 78.6 | 80.6 | 70.5 |
| 미국 | 23.7 | 23.0 | 23.3 | 25.2 | 26.5 | 27.8 | 28.8 | 30.8 | 25.2 |
| 동아시아 및 태평양 | 47.4 | 48.5 | 52.1 | 57.5 | 60.5 | 63.9 | 65.0 | 67.5 | 53.1 |
| 중소득 국가 | 51.7 | 54.0 | 56.1 | 60.6 | 62.2 | 62.9 | 62.0 | 62.8 | 53.4 |
| 고소득 국가 | 47.8 | 46.6 | 46.8 | 49.7 | 52.0 | 55.2 | 56.4 | 58.5 | 48.9 |
| OECD | 44.0 | 42.8 | 42.4 | 44.7 | 46.8 | 49.8 | 51.0 | 53.1 | 45.1 |
| 전세계 | 48.4 | 47.8 | 48.3 | 51.4 | 53.7 | 56.5 | 57.3 | 59.2 | 49.7 |

자료: World dataBank, WDI(<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

최근 무역자유화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체제에 편입한 이후 1995년 WTO 가입을 통하여 다자통상체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자통상체제인 WTO가 성립된 이후 오히려 각 국가들이 활발히 FTA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도 2000년대에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FTA 로드맵을 정립하면서 FTA 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표 1-2]와 같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European Free Trade Area)¹⁾,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²⁾, 인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³⁾, 페루, 그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표 1-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진행상황 | 대상 국가 |
|------------|--|
| 발효 및 협상 종료 | ASEAN(싱가포르 포함), 미국, EU, 칠레, 싱가포르, EFTA, 인도, 페루 |
| 협상 중 | 호주, GCC ¹⁾ ,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 협상 준비 중 | 일본, 중국, MERCOSUR ²⁾ ,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미 ³⁾ |

주: 1)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회원국이다. 2)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정회원국이며 칠레, 볼리비아 2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3)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등 6개국을 일컫는다.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new/index.asp>).

리고 미국과의 FTA를 발효시켰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초기에 발효한 FTA로 인해 발효 이후 FTA 상대국에 대한 한국의 상품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하고, 변화했다면 상품경쟁력 변화가 무슨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 FTA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TA를 체결한 이후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상품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FTA의 성과를 평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준구, 박지현(2004)은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을 분석하였는데, FTA 발효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가장 초기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와의 FTA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는데,

3)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27개국.

이는 무역 전환 및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조미진, 박지현(2009)은 한·칠레 FTA 발효 5년 시점에서 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들은 지난 5년간 FTA 이행실적을 볼 때 우려와 달리 농업부문에서의 피해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 품목이 관세양허 제외 및 DDA 이후 논의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칠레 FTA로 인한 개방폭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칠레 FTA를 평가한 최근 연구로는 송송이(2011)가 있다. 이 연구 역시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칠레 수출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시장진출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 한국무역협회(2007)는 한·EFTA FTA 발효 1년에 따른 수출입 동향분석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EFTA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FTA 수출은 3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EFTA 발효 직전에 실현된 대노르웨이 선박 수출과 대스위스 금괴 및 그림 수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출의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FTA 발효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교역액의 변화를 단순 비교하고 있을 뿐이며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미아(2008), 박혜진, 김기홍(2009), 최용제(2010)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미아(2008)는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FTA에 따른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환율, GDP, 상대가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칠레 FTA가 실제 한국의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제조업 9개 산업에 대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는 한국의 제조업 부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진, 김기홍(2009)은 한·칠레 FTA의 효과를 IT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한·칠레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수출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칠레 FTA로 인한 관세의 점진적 인하는 IT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부문의 수출증대 역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연구인 최용제(2010) 역시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수출 증가가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수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환율, 칠레의 GDP, FTA 더미를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도의 경우 한·칠레 FTA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상당 정도로 증가했으며 산업연관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한성 외(2009)는 한·ASEAN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이후 상품협정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한·ASEAN FTA 발효 2년차의 수입활용률은 50% 수준으로 한·칠레의 활용률인 9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ASEAN의 경우 국내적으로 FTA를 활용할 준비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 외에 수출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FTA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비교우위(Kang, Sawada, and Yun 2004; 황윤진 2006)나 각 기업의 업종별 생산성(권철우, 전봉걸 2008)을 기반에 둔 연구가 있다. 상기

연구들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기반하여 업종별 비교우위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평가하거나 각 기업별 생산성을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같이 FTA의 성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FT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FTA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FTA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발효 FTA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FTA가 발효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을 대상으로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상품경쟁력은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와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한다. 이상의 무역지수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수출 혹은 교역변수보다 보편화된 지표로 상품경쟁력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그리고 FTA 발효 이후 각 무역지수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FTA 발효 이후 관세율 변화추이 역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김한성 외(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각 발효대상국에 대한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된 상품경쟁력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즉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수출입 변화에 영향을 주어 상품경쟁력 지표인 TSI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상품경쟁력 지표인 TSI가 수출입 자료를 통하여 계산되는 관계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수출함수를 확장하여 설정하되,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환율과 FTA 효과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용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상품경쟁력이 FTA 발효 전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각 FTA별로 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관세율 및 활용률을 계산하고, 두 변수가 상품경쟁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상품경쟁력의 변화요인을 수출함수를 확장하여 실증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발효국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와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한다.

TSI는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산업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산업의 교역규모(수출입 총액)로 나눈 값이다. 이는 수출에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수출입 차이가 교역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수출입 차이를 교역규모로 나누어 도출한다. 따라서 TSI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SI는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FTA 발효대상국에 대해 각각 알아볼 수 있다.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dots\dots\dots [\text{식 2-1}]$$

TSI_{ij}^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 j 국가 무역특화지수

X_{ij}^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j 국가로의 수출액

M_{ij}^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j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그리고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특정 국가의 교역상품 간에 비교우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경쟁력 평가에 TSI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그러나 RCA 지수의 경우 전 세계에 대해서만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CA 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MCA의 경우 [식 2-2]와 같이 특정 국가의 대각국 수출비중을 특정국의 대세계 수출비중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TSI와 마찬가지로 FTA 발효대상국에 대해 각각 계산될 수 있다.

즉 MCA는 어떤 산업의 수출에서 해당 국가와 교역상대국 간의 수출비중을 해당 국가의 총수출비중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전자의 값이 후자보다 크면 MCA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반대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M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k 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MCA는 수입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각종 국내 무역장벽으로 지수가 왜곡되어 근본적인 비교우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수출통계가 이용된다.⁴⁾

4) 양준석, 김홍률(2002) 참고.

$$MCA_{ij}^k = \frac{X_{ij}^k / X_{ij}}{X_{iw}^k / X_{iw}} \dots\dots\dots [식 2-2]$$

MCA_{ij}^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 j 국가 시장비교우위지수

X_{ij}^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j 국가로의 수출액

X_{ij} : i 국가 j 국가로의 총 수출액

X_{iw}^k : i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iw} : i 국가 대세계 총 수출액

이러한 교역경쟁력은 수출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동일한 기준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UN의 COMTRADE가 제공하는 HS2002 6단위 수출입 통계⁵⁾를 이용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3: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2단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HS2002 6단위와 ISIC3 4단위의 연계표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구하였다.⁶⁾ 또한 이 연구에서는 두 분류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산업인 전기, 가스, 난방 공급(40), 기타 사업서비스(74), 여가, 문화, 스포츠 서비스(92), 기타 서비스(93)와 미분류(99)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되어 2002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정식 서명되어 2004

5)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 등 국내통계를 이용할 경우 연도별로 다른 HS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6년의 자료는 HS2002 기준인 반면 2007년의 자료는 HS2007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6) <http://wits.worldbank.org/wits>.

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가 남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다자주의 중심에서 지역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 표 2-1. 한·칠레 FTA 추진 경과 ▮

| 날짜 | 추진 경과 |
|--------------------|-------------------------------------|
| 1999년 12월 14~17일 | 제1차 협상 개시(산티아고) |
| 2000년 2월 29일~3월 3일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 2000년 5월 16~19일 |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 2000년 12월 12~15일 |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 2002년 8월 20~23일 |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 2002년 10월 18~20일 | 제6차 협상 개최(제네바) |
| 2002년 10월 25일 | 협상 타결 |
| 2003년 2월 15일 | 정식 서명 |
| 2004년 4월 1일 | 한·칠레 FTA 발효 |
| 2004년 4월~2010년 4월 |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자유무역위원회 여섯 차례 개최 |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농림수산업과 광업 관련 산업에서 한국의 대칠레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수입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한국의 대칠레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수출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전후로 TSI가 급격하게 변화한 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체결 이전부터 양국의 주요 수출입 상품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칠레의 경우 농림수산업과 광업 관련 산업의 품목이 주요 수출품목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제조업 관련 산업의 품목이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었

7)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pp. 10~11.

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FTA 발효 전후에 TSI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칠레 TSI 중 약간의 특이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의 경우 FTA 발효 이후 TSI가 여전히 음(-)의 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이 수입특화 산업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 TSI의 상승은 특이하다. 물론 2007년에 일시적으로 -0.869까지 하락하였으나 FTA 발효 이전인 -0.9 이하 수준은 아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경우 2004년 한국의 대칠레 TSI는 0.588에서 2005년 0.79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FTA 발효기간이 지속될수록 더욱 증가하다가 2008년 일시적으로 0.305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0.995로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의 경우 2004년 0.618의 TSI를 보이다가 2005년 0.251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8년 다시 0.949까지 회복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의 경우 2003년 0.654에서 2004년 0.995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0.956을 기록하여 한·칠레 FTA 이후 수출특화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의 2003년 TSI는 -0.993에서 2004년 1.000으로 급격히 변하였으나 이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내의 조선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SI의 결과와 달리 한국의 대칠레 MCA에 따르면 칠레와의 교역에서 한국 산업 대부분은 비교열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04~09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나타낸 산업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두 개 산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두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여

표 2-2. 한국의 대칠레 TSI

| 코드 | 산업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984 | -0.996 | -0.989 | -0.999 | -0.996 | -0.997 | -0.998 | -0.996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000 | -1.000 | -0.984 | -0.817 | -0.575 | -0.869 | -0.665 | -0.360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000 | -1.000 | -0.889 | -0.991 | -1.000 | -1.000 | -1.000 | -1.000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 | - | - | -1.000 | - | - | - |
| 13 | 금속광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4 | 기타 광업 | -1.000 | -1.000 | -0.99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947 | -0.966 | -0.983 | -0.988 | -0.995 | -0.983 | -0.969 | -0.977 |
| 16 | 담배 제조업 | 1.000 | 1.000 | - | 1.000 | - | - | 1.000 | 1.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978 | 0.987 | 0.991 | 1.000 | 0.991 | 0.991 | 0.995 | 0.998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991 | 0.891 | 1.000 | 0.619 | 0.948 | 0.914 | 0.998 | 0.999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729 | 0.496 | 0.588 | 0.798 | 0.714 | 0.999 | 0.305 | 0.995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998 | -1.000 | -1.000 | -0.997 | -1.000 | -0.998 | -1.000 | -0.999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926 | -0.958 | -0.976 | -0.966 | -0.933 | -0.972 | -0.965 | -0.956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996 | 0.991 | 0.618 | 0.251 | 0.461 | 0.910 | 0.949 | 0.891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1.000 | 0.998 | 1.000 | 1.000 | 1.000 | 1.000 | 0.987 | 0.999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825 | -0.162 | -0.048 | -0.003 | -0.151 | -0.136 | 0.268 | -0.069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000 | 0.994 | 1.000 | 1.000 | 1.000 | 0.999 | 1.000 | 1.000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000 | 0.982 | 0.999 | 0.999 | 0.997 | 0.993 | 0.996 | 0.995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882 | -0.899 | -0.946 | -0.939 | -0.938 | -0.937 | -0.890 | -0.894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998 | 0.999 | 0.967 | 0.995 | 0.998 | 0.999 | 0.938 | 0.999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00 | 0.999 | 0.986 | 0.757 | 0.994 | 0.999 | 0.994 | 0.999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999 | 0.991 | 0.999 | 0.998 | 0.999 | 0.999 | 0.999 | 0.999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997 | 0.848 | 0.854 | 0.885 | 0.959 | 1.000 | 1.000 | 0.999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992 | 1.000 | 0.999 | 1.000 | 1.000 | 0.999 | 0.999 | 0.998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761 | 0.654 | 0.995 | 0.820 | 0.765 | 0.869 | 0.828 | 0.956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000 | -0.993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1.000 | 0.935 | 0.996 | 0.994 | 0.994 | 0.989 | 0.986 | 0.989 |
| | 전산업 | -0.248 | -0.343 | -0.464 | -0.329 | -0.418 | -0.146 | -0.153 | -0.164 |

주: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과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은 교역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겨진다. 즉 MCA는 국내산업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상기 두 산업의 MCA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MCA가 하락추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대칠레 수출에서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2.0%에서 2007년 80.8%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의 수출은 2002년 0.5억 달러에서 2007년 18.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2002년 2.536이던 MCA가 2007년 8.949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단 2008~09년 들어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이전 수준

으로 감소함에 따라 MCA 역시 하락하게 된다.

한국의 대칠레 MCA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의복 및 포피제품 제조업(18)의 경우 2002년 0.112이던 MCA가 2004년 0.084, 2007년 0.0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차 금속 제조업(27)은 2002년 1.115로 비교우위 산업이었으나 2004년 0.518로 하락하여 비교열위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 MCA는 0.264까지 하락하게 된다. 다만 두 산업 모두 2008년을 기점으로 FTA 발효시점인 2004년 수준의 MCA를 회복하였다.

일부 산업에서는 FTA 발효 직전을 기준으로 MCA가 소폭 상승하여 급격한 MCA 하락을 저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의 경우 2002년 1.671에서 2003년 1.722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04년 1.574, 2007년 0.600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이와 달리 2004년에 MCA 상승을 보인 산업도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음해인 2005년부터 다시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 제조업(17)의 경우 2002년 1.088에서 2003년 0.983으로 하락하였으나 FTA가 발효한 2004년 1.034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5년 0.841, 2007년 0.488, 2009년 0.496으로 2008년을 제외하면 MCA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TSI의 경우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등 일부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이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MCA는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점점 하락추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MCA의 경우 국내산업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상기 두 산업의 MCA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MCA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칠레 FTA는 한국의 대칠레 상품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한국의 대칠레 MCA

| 코드 | 산업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102 | 0.036 | 0.093 | 0.013 | 0.054 | 0.034 | 0.024 | 0.051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0 | 0.000 | 0.600 | 0.345 | 0.573 | 0.540 | 0.435 | 0.898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0 | 0.000 | 0.018 | 0.006 | 0.000 | 0.000 | 0.000 | 0.000 |
| 14 | 기타 광업 | 0.000 | 0.000 | 0.007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158 | 0.219 | 0.146 | 0.095 | 0.045 | 0.094 | 0.150 | 0.145 |
| 16 | 담배 제조업 | 0.011 | 0.066 | 0.000 | 0.004 | 0.000 | 0.000 | 0.002 | 0.001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1.088 | 0.983 | 1.034 | 0.841 | 0.646 | 0.488 | 0.560 | 0.496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112 | 0.094 | 0.084 | 0.041 | 0.024 | 0.028 | 0.104 | 0.114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143 | 0.053 | 0.051 | 0.033 | 0.056 | 0.058 | 0.021 | 0.017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061 | 0.000 | 0.010 | 0.086 | 0.007 | 0.047 | 0.000 | 0.042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594 | 0.364 | 0.187 | 0.211 | 0.425 | 0.167 | 0.256 | 0.384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404 | 0.269 | 0.192 | 0.227 | 0.157 | 0.074 | 0.135 | 0.076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2.536 | 4.540 | 2.323 | 3.856 | 4.999 | 8.949 | 5.304 | 4.483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79 | 1.259 | 1.237 | 1.258 | 1.031 | 0.498 | 0.664 | 0.484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671 | 1.722 | 1.574 | 1.234 | 0.995 | 0.600 | 0.834 | 0.941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157 | 0.186 | 0.622 | 0.427 | 0.544 | 0.130 | 0.690 | 1.226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1.115 | 0.829 | 0.518 | 0.357 | 0.453 | 0.264 | 0.417 | 0.509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490 | 0.413 | 0.352 | 0.247 | 0.184 | 0.228 | 1.533 | 4.702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489 | 1.175 | 1.316 | 0.970 | 0.622 | 0.351 | 0.678 | 0.966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67 | 0.066 | 0.133 | 0.180 | 0.141 | 0.093 | 0.144 | 0.476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909 | 0.631 | 0.561 | 0.431 | 0.292 | 0.216 | 0.559 | 0.93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529 | 0.331 | 0.519 | 0.478 | 0.431 | 0.198 | 0.203 | 0.23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778 | 0.301 | 0.246 | 0.124 | 0.070 | 0.040 | 0.069 | 0.119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988 | 2.945 | 3.042 | 2.598 | 2.470 | 1.689 | 1.948 | 2.709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001 | 0.001 | 0.015 | 0.003 | 0.027 | 0.013 | 0.016 | 0.002 |
| 36 | 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제조업 | 0.449 | 0.267 | 0.267 | 0.207 | 0.188 | 0.112 | 0.180 | 0.173 |

주: 석탄광업(10),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 금속광업(13)은 수출 내역이 적어 표에서 삭제함.

3.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세 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친 후 2004년 1월 1차 협상이 개시되어 같은 해 11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5년 8월에 FTA가 정식 서명되었으며, 2006년 3월 발효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 한 차례의 FTA 이행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싱가포르 FTA는 동

아시아에서 한국이 체결한 첫 FTA로서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한·ASEAN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 표 2-4. 한·싱가포르 FTA 추진 경과 ▣

| 날짜 | 추진 경과 |
|-----------------|-------------------------|
| 2003년 3월~9월 | 산·관·학 공동연구 세 차례 개최 |
| 2004년 1월 27~29일 | 제1차 협상 개시(싱가포르) |
| 2004년 3월 24~26일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 2004년 5월 19~21일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 2004년 7월 21~23일 |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 2004년 10월 4~8일 | 제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 2004년 11월 29일 | 협상 타결 |
| 2005년 8월 3일 | 정식 서명 |
| 2006년 3월 2일 | 한·싱가포르 FTA 발효 |
| 2009년 1월 14~16일 | 한·싱가포르 FTA 1차 이행검토회의 개최 |

2006년 3월에 FTA를 발효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분석기간 모두에서 교역이 존재하지 않아 특정 연도에만 TSI가 계산되는 석탄광업(10),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 금속광업(13)을 제외하면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분석기간 모두에서 수입특화를 보인 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1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뿐이다(표 2-5 참고).

TSI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대부분의 산업에서 TSI가 일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 제조업(17)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던 2009년을 제외하면 0.8대의 일정한 TSI를 보이며, 담배 제조업(16)의 경우 2005년에 TSI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으나 이외 모든 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TSI가 매우 높았다.

8)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a), p. 11.

그리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의 TSI는 2004년 0.427에서 2005년 0.507로 상승하였고, FTA 발효 연도인 2006년에 0.620으로 상승한 이후 2008년까지 0.75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음식료품 제조업(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은 TSI가 대체적으로 감소한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 발효 전후로 TSI가 크게 변화한 산업 중 TSI가 증가한 산업으로는 농축산업(01),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전기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등이 있다. 이 중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은 2004년 음(-)이었던 TSI가 FTA 발효 전후 기간인 2005~09년 양(+)의 TSI로 전환될 정도로 급격한 TSI 변화를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TSI는 2004년 0.392에서 FTA 발효 직전인 2005년 -0.39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발효 연도인 2006년 -0.592까지 하락하였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은 2004년 -0.5 정도이던 TSI가 2005년과 2007년 -0.7대로 하락하는 등 이 두 산업의 TSI는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FTA 발효 전후로 TSI가 크게 변화한 산업이 있다는 것은 FTA 발효시점을 중심으로 이들 산업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TSI와 달리 한국의 대상국인 MC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는 한국 대부분의 산업이 비교우위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분석기간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⁹⁾뿐이다. 이 결과는 이들 3개 산업에서 한국의 대상국인 수출이 집중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의 경우 2004년의 MCA는 1보다 작은 값을 보이나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1을 훨씬 상회하여 비교우위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2-5. 한국의 대싱가포르 TSI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061 | 0.437 | 0.699 | 0.571 | 0.820 | 0.973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670 | -0.696 | 0.035 | 0.060 | -0.510 | 0.560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519 | 0.488 | 0.373 | 0.508 | 0.472 | 0.650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1.000 | - | -1.000 | -1.000 | -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000 | 1.000 | -1.000 | - | -1.000 | - |
| 13 | 금속광업 | - | -0.962 | -1.000 | -1.000 | -1.000 | 1.000 |
| 14 | 기타 광업 | 0.855 | 0.808 | 0.165 | 0.821 | 0.643 | 0.826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301 | -0.270 | -0.321 | -0.318 | -0.292 | -0.360 |
| 16 | 담배 제조업 | 0.865 | 0.585 | 0.994 | 0.985 | 0.983 | 0.986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852 | 0.870 | 0.862 | 0.824 | 0.863 | 0.661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716 | 0.735 | 0.810 | 0.840 | 0.851 | 0.817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392 | -0.391 | -0.592 | -0.367 | -0.255 | -0.372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501 | -0.716 | -0.569 | -0.788 | -0.584 | 0.139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516 | 0.720 | 0.753 | 0.070 | 0.097 | 0.1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937 | -0.944 | -0.970 | -0.937 | -0.951 | -0.903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471 | 0.788 | 0.692 | 0.823 | 0.785 | 0.65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313 | -0.371 | -0.358 | -0.285 | -0.181 | -0.214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251 | 0.344 | 0.444 | 0.332 | 0.381 | 0.391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565 | -0.575 | -0.475 | -0.651 | -0.547 | -0.528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705 | 0.738 | 0.835 | 0.848 | 0.849 | 0.854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427 | 0.507 | 0.620 | 0.701 | 0.759 | 0.685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101 | 0.016 | 0.306 | -0.016 | 0.209 | 0.213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55 | 0.089 | 0.179 | 0.013 | -0.001 | 0.187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135 | 0.142 | 0.265 | 0.240 | 0.373 | 0.345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108 | 0.044 | 0.121 | 0.033 | -0.134 | -0.115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109 | -0.250 | -0.023 | -0.230 | -0.199 | -0.066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868 | 0.891 | 0.864 | 0.796 | 0.771 | 0.931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750 | 0.916 | 0.960 | 0.998 | 0.997 | 0.998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638 | 0.625 | 0.526 | 0.375 | 0.743 | 0.846 |
| | 전산업 | 0.118 | 0.164 | 0.234 | 0.271 | 0.322 | 0.267 |

주: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은 교역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2009년 현재 3개 산업이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싱가포르 MCA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과 유사한 양상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타 광업(14),¹⁰⁾ 음식료품 제조업(15), 섬유제품 제조업(1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¹¹⁾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의 MCA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 중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이 최근 한국의 주요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 산업에서 한국의 대싱가포르 MCA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한국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 2-6. 한국의 대싱가포르 MCA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178 | 0.198 | 0.327 | 0.286 | 0.449 | 0.846 |
| 02 | 인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44 | 0.046 | 0.046 | 0.019 | 0.022 | 0.074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292 | 0.277 | 0.288 | 0.361 | 0.235 | 0.254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900 | 35.977 | 0.000 | 0.000 | 0.000 | 0.000 |
| 14 | 기타 광업 | 0.962 | 0.663 | 0.414 | 0.777 | 0.300 | 0.846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367 | 0.355 | 0.287 | 0.264 | 0.224 | 0.207 |
| 16 | 담배 제조업 | 0.034 | 0.019 | 0.061 | 0.076 | 0.152 | 0.229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222 | 0.192 | 0.191 | 0.187 | 0.158 | 0.16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096 | 0.097 | 0.110 | 0.119 | 0.101 | 0.111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093 | 0.043 | 0.037 | 0.066 | 0.042 | 0.047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169 | 0.107 | 0.227 | 0.148 | 0.097 | 0.358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772 | 0.734 | 0.634 | 0.531 | 0.535 | 0.476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326 | 0.264 | 0.178 | 0.400 | 0.286 | 0.319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1.738 | 2.697 | 2.240 | 2.068 | 3.071 | 3.644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551 | 0.386 | 0.375 | 0.355 | 0.329 | 0.368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460 | 0.411 | 0.392 | 0.336 | 0.270 | 0.263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547 | 0.422 | 0.547 | 0.444 | 0.489 | 0.477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891 | 0.906 | 0.973 | 0.766 | 0.746 | 0.587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655 | 0.553 | 0.536 | 0.550 | 0.549 | 0.436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96 | 0.419 | 0.468 | 0.348 | 0.360 | 0.434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942 | 0.997 | 1.035 | 0.525 | 0.603 | 0.788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686 | 0.863 | 0.897 | 0.530 | 0.420 | 0.403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198 | 1.980 | 2.205 | 1.920 | 1.414 | 1.582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657 | 0.296 | 0.296 | 0.141 | 0.109 | 0.115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271 | 0.236 | 0.150 | 0.106 | 0.092 | 0.166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445 | 1.144 | 1.128 | 3.300 | 2.577 | 2.079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342 | 0.325 | 0.364 | 0.195 | 0.250 | 0.623 |

주: 석탄광업(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 금속광업(13)은 수출 내역이 적어 표에서 삭제함.

10) 2009년 0.846으로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으나 분석기간 전체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11) 2007년 0.400으로 반등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2006년 186억 달러에서 2009년 295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은 2006년 1억 6,059만 달러에서 2009년 1억 2,668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우선 TSI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농축산업(01),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전기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등에서 FTA 발효 전후 급격한 TSI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MCA에 따르면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산업으로 수출이 집중된 까닭에 이외 산업의 MCA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즉 한·싱가포르 FTA는 한국의 대싱가포르 상품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한·EFTA FTA

한·EFTA FTA는 2004년 두 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한 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의 공식협상을 갖고, 같은 해 7월 12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후 2010년까지 한·EFTA FTA 이행 점검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EU시장과 동일 경제권인 EFTA와의 FTA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측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FTA의 상호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

표 2-7. 한·EFTA FTA 추진 경과

| 날짜 | 추진 경과 |
|--------------------|------------------------------------|
| 2004년 8~10월 | 산·관·학 공동연구 두 차례 개최 |
| 2005년 1월 18~21일 | 제1차 협상 개시(제네바) |
| 2005년 4월 4~8일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 2005년 5월 30일~6월 2일 | 제3차 협상 개최(오슬로) |
| 2005년 7월 4~8일 |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 2005년 7월 12일 | 협상 타결 |
| 2005년 12월 15일 | 정식 서명 |
| 2006년 9월 1일 | 한·EFTA FTA 발효 |
| 2008년 5월~2010년 1월 | 한·EFTA FTA 이행 점검을 위한 공동위원회 두 차례 개최 |

2006년 9월 FTA를 발효한 한국과 EFTA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이전의 FTA와 다르게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기간 모두에서 수출특화를 보이는 산업은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 네 개 산업뿐이다. 그리고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등 두 개 산업에서는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즉 상기 여섯 개 산업에서만 한국은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EFTA FTA가 발효된 2006년 전후로 TSI가 급격하게 변화한 산업 가운데 TSI가 증가한 산업은 농축산업(0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7) 등이다. 이 중 농축산업(01)의 경우, 2004~05년 TSI가 -1에 가까워 강한 수입특화를 보였으나 2006년 0.028로 증가하면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다. 물론 2007년에 다시 -0.404로 음(-)의 값을 보이면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나 이전만큼 -1에 가깝지는 않았으며, 2008년부터는 또 다시 수출특화 산업으로 바뀌었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12)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b), pp. 13~18.

핵연료 제조업(23)은 2005년까지 -1에 가까운 TSI를 나타냈으나 FTA가 발효된 2006년 0.005로, 2007년 0.191로 증가하여 수출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8년 -0.982, 2009년 -0.999로 FTA 발효 이전과 같은 수입특화 산업으로 복귀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27)은 FTA 발효 연도인 2006년 TSI가 0.358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일시적으로 수출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달리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은 FTA 발효 전후 TSI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섬유제품 제조업(17)의 TSI는 2004년 -0.071에서 2005년 -0.150으로 하락한 이후 2009년에는 -0.244로 더욱 하락하였고,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의 TSI는 2004년 0.483에서 2006년 0.033, 2009년 -0.2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TSI 역시 2004년 -0.058에서 2006년 -0.102, 2009년 -0.280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의 TSI는 2004년 0.586에서 2006년 0.475, 2009년 -0.227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의 대EFTA TSI 중 특이한 것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농축산업(01)의 TSI가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이라는 것과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입 산업으로 평가되는 1차 금속 제조업(27)에서 급격한 TSI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대EFTA MCA에 따르면, 모든 분석기간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뿐이다. 이 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량 변동이 심했던 2008~09년을 제외할 경우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EFTA로의 수출

표 2-8. 한국의 대EFTA TSI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985 | -0.887 | 0.028 | -0.404 | 0.431 | 0.394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953 | -0.919 | -0.961 | -0.967 | -0.977 | -0.965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967 | -0.988 | -0.980 | -0.990 | -0.994 | -1.000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1.000 | -1.000 | - | - | -1.000 | -1.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1.000 | -1.000 |
| 13 | 금속광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14 | 기타 광업 | -0.985 | -1.000 | -1.000 | -0.998 | -0.948 | -0.983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883 | -0.860 | -0.837 | -0.916 | -0.850 | -0.892 |
| 16 | 담배 제조업 | -1.000 | -1.000 | -0.881 | -1.000 | -0.937 | -0.996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071 | -0.150 | -0.143 | -0.079 | -0.255 | -0.244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483 | 0.140 | 0.033 | 0.039 | 0.009 | -0.258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058 | -0.255 | -0.102 | -0.290 | -0.168 | -0.28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958 | -0.964 | -0.958 | -0.918 | -0.997 | -0.943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955 | -0.860 | -0.878 | -0.754 | -0.811 | -0.872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736 | -0.627 | -0.729 | -0.731 | -0.713 | -0.977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807 | -0.999 | 0.005 | 0.191 | -0.982 | -0.999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803 | -0.858 | -0.865 | -0.835 | -0.862 | -0.881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586 | 0.549 | 0.475 | 0.310 | 0.245 | -0.227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505 | -0.640 | -0.586 | -0.500 | -0.523 | -0.334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394 | -0.502 | 0.358 | -0.954 | -0.832 | -0.153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487 | -0.443 | -0.462 | -0.598 | -0.768 | -0.887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930 | -0.902 | -0.902 | -0.942 | -0.923 | -0.960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451 | 0.691 | 0.682 | 0.613 | 0.322 | 0.42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811 | -0.774 | -0.809 | -0.836 | -0.802 | -0.69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560 | 0.641 | 0.448 | 0.303 | 0.314 | 0.178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859 | -0.873 | -0.854 | -0.881 | -0.899 | -0.917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855 | 0.917 | 0.915 | 0.806 | 0.689 | 0.218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803 | 0.825 | 0.943 | 0.916 | 0.959 | 0.948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193 | -0.191 | -0.112 | -0.623 | -0.386 | -0.426 |
| | 전산업 | -0.350 | -0.250 | -0.118 | -0.520 | -0.243 | -0.398 |

주: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은 교역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중 50% 이상이 이들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의 경우 한국의 대EFTA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세계 수출 역시 크지 않아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EFTA MCA의 특징은 FTA 발효 다음 해인 2007년에만 비교적 높은 MCA를 가지는 산업이 많다는 것이다.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

스업(05),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은 2007년 MCA가 1보다 커지면서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FTA 수출이 2007년에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표 2-9. 한국의 대EFTA MCA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033 | 0.057 | 0.089 | 0.043 | 0.048 | 0.072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707 | 0.768 | 0.384 | 0.835 | 0.287 | 0.612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86 | 0.041 | 0.075 | 0.144 | 0.030 | 0.001 |
| 14 | 기타 광업 | 0.089 | 0.000 | 0.000 | 0.018 | 0.064 | 0.035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345 | 0.340 | 0.380 | 0.408 | 0.289 | 0.273 |
| 16 | 담배 제조업 | 0.000 | 0.000 | 0.122 | 0.000 | 0.000 | 0.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506 | 0.417 | 0.306 | 0.586 | 0.267 | 0.229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624 | 0.476 | 0.332 | 0.932 | 0.421 | 0.343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605 | 0.515 | 0.520 | 0.901 | 0.649 | 0.565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089 | 0.087 | 0.075 | 0.279 | 0.014 | 0.272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57 | 0.142 | 0.064 | 0.127 | 0.044 | 0.044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555 | 0.597 | 0.380 | 0.814 | 0.382 | 0.031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001 | 0.000 | 0.005 | 0.319 | 0.008 | 0.001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319 | 0.198 | 0.159 | 0.342 | 0.134 | 0.156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194 | 1.831 | 1.104 | 2.010 | 0.892 | 0.721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590 | 0.463 | 0.390 | 1.102 | 0.721 | 1.040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1.791 | 0.578 | 1.872 | 0.179 | 0.188 | 0.938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967 | 0.962 | 0.601 | 1.427 | 0.612 | 0.373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391 | 0.447 | 0.379 | 0.393 | 0.299 | 0.272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203 | 0.284 | 0.230 | 0.523 | 0.224 | 0.382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300 | 0.278 | 0.138 | 0.647 | 0.416 | 0.986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567 | 0.662 | 0.293 | 0.533 | 0.231 | 0.253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786 | 0.358 | 0.234 | 0.307 | 0.133 | 0.133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413 | 2.563 | 1.744 | 2.117 | 0.622 | 0.209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03 | 4.079 | 5.695 | 3.911 | 7.251 | 5.847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1.499 | 1.277 | 0.841 | 1.268 | 0.755 | 0.823 |

주: 석탄광업(10),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 금속광업(13)은 수출 내역이 적어 표에서 삭제함.

뿐만 아니라 분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2006년 이전에 높은 MCA를 기록한 산업이 존재하는데, 임업, 별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은 꾸준한 MCA 감소를 보이는 산업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처럼 수출감소의 결과라기보다는 수출증가가 미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상의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은 일정한 MCA를 가지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FTA 발효 이후 TSI의 변화가 비교적 큰 산업은 농축 산업(01),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1차 금속 제조업(27) 등 다수이다. 그러나 MCA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3)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에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까닭에 이외 산업의 MCA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EFTA FTA는 한국의 대EFTA 상품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5.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2004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다섯 차례의 공동 연구를 거쳐 2005년 2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6년 제11차 협상에서 상품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5차에 걸친 협상 끝에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도 타결되었다. 상품무역 협정은 2006년 8월 정식 서명되어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세 차례의 이행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ASEAN FTA는 한국이 이전까지 추진했던 FTA 중 경제력과 교역량이 가장 큰 경제권과의 FTA였으며,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로 부상하는 데 기여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표 2-10. 한·ASEAN FTA 추진 경과

| 날짜 | 추진 경과 |
|--------------------|---------------------------|
| 2004년 3월~8월 | 산·관·학 공동연구 다섯 차례 개최 |
| 2005년 2월 23~25일 | 제1차 협상 개시(자카르타) |
| 2005년 4월 19~21일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 2005년 6월 8~11일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 2005년 7월 19~20일 | 제4차 협상 개최(방콕) |
| 2005년 9월 6~9일 | 제5차 협상 개최(서울) |
| 2005년 9월 23일 | 제6차 협상 개최(라오스) |
| 2005년 10월 11~14일 | 제7차 협상 개최(하노이) |
| 2005년 11월 24~25일 | 제8차 협상 개최(쿠알라룸푸르) |
| 2006년 2월 4~7일 | 제9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
| 2006년 3월 6~10일 | 제10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
| 2006년 4월 23~28일 | 제11차 협상에서 상품 무역협상 타결(프놈펜) |
| 2006년 8월 24일 | 상품 무역협정 정식 서명 |
| 2007년 6월 1일 | 한·ASEAN FTA 상품 무역협정 발효 |
| 2009년 10월~2010년 7월 | 한·ASEAN FTA 세 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2009년 현재 한국의 대ASEAN TSI에 따르면, 총 30개 산업 중 수출특화 산업 12개, 수입특화 산업 18개로 수출특화 산업에 비해 수입특화 산업이 다소 많다. 이 중 수출특화 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이며, 수입특화 산업에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 관련 산업과 일부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ASEAN TSI에서 특이한 점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제품 제조업(17)의 경우 0.6 내외의 높은 TSI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수출특화 산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TSI는 급격히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0보다 커 수출특화 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TA 발효 이후 TSI가 증가하는 추이인 산업으로는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이 있다. 특히 전

1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pp. 13~16.

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의 경우 2007년을 전후하여 TSI가 양(+)의 값을 보이면서 수출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TSI가 상승하며,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의 경우 FTA 발효연도인 2007년에는 TSI가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이를 보여 2009년에는 2006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의 TSI는 2005년 0.053으로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6년 -0.085로 하락한 이후 2009년 -0.392까지 하락하면서 수입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의 TSI 역시 2004년 0.121에서 2008년 -0.053, 2009년 -0.072로 하락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수입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TSI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0.496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 0.092까지 하락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은 과거에 높은 TSI를 보이다가 2007년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2008년 0.583, 2009년 0.567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TSI를 보인다.

한국의 대ASEAN MCA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FTA와 달리 모든 분석기간에서 MCA가 1보다 큰 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섬유제품 제조업(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석탄광업(10), 기타 광업(14)과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은 2008년의 MCA가 각각 0.113, 0.832와 0.997로 1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기간에서 MCA가 1보다 크다.

한국의 대ASEAN MCA에서 특이한 점은 광업 관련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즉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의 2005년

표 2-11. 한국의 대ASEAN TSI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973 | -0.962 | -0.969 | -0.960 | -0.970 | -0.937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685 | -0.740 | -0.730 | -0.572 | -0.572 | -0.644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811 | -0.828 | -0.695 | -0.596 | -0.329 | -0.071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0.999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2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3 | 금속광업 | -0.997 | -0.992 | -0.994 | -0.995 | -0.999 | -0.999 |
| 14 | 기타 광업 | -0.576 | -0.545 | -0.468 | -0.595 | -0.563 | -0.555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684 | -0.634 | -0.607 | -0.599 | -0.626 | -0.522 |
| 16 | 담배 제조업 | 0.139 | -0.554 | -0.668 | -0.480 | -0.690 | -0.616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626 | 0.619 | 0.630 | 0.633 | 0.596 | 0.575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037 | 0.053 | -0.085 | -0.204 | -0.215 | -0.392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496 | 0.441 | 0.286 | 0.198 | 0.161 | 0.092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983 | -0.986 | -0.988 | -0.989 | -0.979 | -0.966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269 | -0.292 | -0.322 | -0.356 | -0.321 | -0.136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662 | -0.713 | -0.741 | -0.621 | -0.532 | -0.286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226 | 0.637 | 0.516 | 0.476 | 0.588 | 0.533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275 | 0.218 | 0.206 | 0.251 | 0.358 | 0.364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373 | 0.351 | 0.342 | 0.306 | 0.323 | 0.316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253 | -0.333 | -0.307 | -0.346 | -0.390 | -0.315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0.642 | 0.707 | 0.713 | 0.604 | 0.578 | 0.633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390 | 0.663 | 0.745 | 0.782 | 0.728 | 0.765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658 | 0.583 | 0.613 | 0.486 | 0.583 | 0.567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284 | 0.117 | 0.129 | 0.279 | 0.144 | -0.121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197 | -0.099 | -0.017 | 0.065 | 0.158 | 0.181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121 | 0.073 | 0.141 | 0.047 | -0.053 | -0.072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038 | -0.127 | 0.240 | 0.301 | 0.443 | 0.62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960 | 0.950 | 0.929 | 0.923 | 0.902 | 0.936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767 | 0.835 | 0.914 | 0.962 | 0.981 | 0.973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109 | 0.015 | -0.078 | -0.156 | -0.080 | -0.038 |
| | 전산업 | 0.035 | 0.026 | 0.038 | 0.078 | 0.093 | 0.092 |

MCA는 9.714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인 가운데 석탄광업(10)과 기타 광업(14)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면 모든 분석기간에서 1보다 큰 값을 기록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주력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의 MCA는 오히려 1보다 작아 ASEAN과의 교역에서는 국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열위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년에 비해 FTA 발효 연도인 2007년에 큰 폭의 MCA 변화를 보이는 산업 중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표 2-12. 한국의 대ASEAN MCA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313 | 0.417 | 0.545 | 0.643 | 0.528 | 0.639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951 | 0.645 | 0.543 | 0.904 | 0.739 | 0.703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134 | 0.139 | 0.240 | 0.419 | 0.462 | 0.431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2.381 | 1.489 | 2.764 | 1.021 | 0.113 | 1.159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212 | 9.714 | 0.000 | 0.000 | 0.000 | 0.000 |
| 13 | 금속광업 | 0.125 | 0.524 | 0.567 | 0.143 | 0.021 | 0.157 |
| 14 | 기타 광업 | 1.957 | 1.771 | 1.195 | 1.517 | 0.832 | 1.467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652 | 0.817 | 0.975 | 1.038 | 1.034 | 1.176 |
| 16 | 담배 제조업 | 0.196 | 0.285 | 0.142 | 0.226 | 0.225 | 0.339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1.688 | 1.828 | 2.072 | 2.157 | 2.134 | 2.487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335 | 0.587 | 0.772 | 0.767 | 1.019 | 1.363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43 | 2.140 | 2.248 | 2.099 | 2.075 | 2.109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458 | 0.567 | 0.699 | 0.639 | 1.141 | 1.553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229 | 1.351 | 1.176 | 1.151 | 1.078 | 1.186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506 | 0.450 | 0.578 | 0.951 | 1.279 | 1.300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1.401 | 2.329 | 1.848 | 2.038 | 2.271 | 2.406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166 | 0.981 | 0.985 | 0.914 | 0.930 | 1.019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765 | 0.684 | 0.651 | 0.604 | 0.550 | 0.614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817 | 0.705 | 0.740 | 0.737 | 0.709 | 0.873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1.380 | 1.609 | 1.653 | 1.591 | 1.654 | 1.587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844 | 0.767 | 0.877 | 1.104 | 0.897 | 0.997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952 | 0.789 | 0.735 | 0.721 | 0.737 | 0.831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948 | 0.867 | 0.851 | 0.775 | 0.694 | 0.568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791 | 0.701 | 0.653 | 0.716 | 0.623 | 0.595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83 | 1.219 | 1.412 | 1.229 | 0.997 | 1.041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382 | 0.204 | 0.309 | 0.304 | 0.350 | 0.42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456 | 0.422 | 0.282 | 0.288 | 0.302 | 0.466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241 | 0.463 | 0.599 | 1.181 | 0.985 | 0.751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903 | 0.920 | 0.866 | 0.788 | 0.931 | 1.025 |

주: 우라늄 및 토륨 광업(12)은 수출 내역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은 MCA가 증가한 산업으로, 석탄광업(10)과 금속광업(13)은 MCA가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TSI의 경우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의 산업에서 최근 들어 TSI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CA에 따르면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석탄광업(10), 금속광업(1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에서 MCA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ASEAN FTA는 한국의 대ASEAN 상품경쟁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발효국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ASEAN을 대상으로 TSI와 MCA 지수를 연도별로 도출하여 FTA 발효 전후의 값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의 대칠레 TSI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MCA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점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CA의 경우 국내산업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의 대칠레 MCA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MCA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국의 대상싱가포르 TSI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대상싱가포르 MCA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한·EFTA FTA의 경우 한국의 대EFTA TSI는 농축산업(01),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1차 금속 제조업(27) 등 다수의 산업에서 변화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CA의 경우 칠레에서와 유사하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3)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에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까닭에 이 외 산업의 MCA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ASEAN FTA의 경우 한국의 대ASEAN TSI는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3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 다수의 산업에서 최근 들어 TSI가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대ASEAN MCA 역시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석탄광업(10), 금속광업(1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등 다수의 산업에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칠레 FTA는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TSI 및 MCA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한국의 대칠레 상품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FTA 발효 이후 다수의 산업에서 TSI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싱가포르 및 대EFTA 상품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ASEAN FTA는 FTA 발효 이후 다수의 산업에서 TSI 및 MCA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ASEAN 상품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상품경쟁력 변화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칠레의 경쟁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FTA에서 FTA 발효 전후 일부 산업에서 상품경쟁력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교역구조가 변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FTA로 인해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관세율 변화가 큰 산업에서 상품경쟁력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한성 외(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로 관세가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FTA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FTA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석에 필요한 관세율은 WITS의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가 제공하는 실질실효관세율(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을 이용할 것이며,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을 이용할 것이다. 실질실

효관세율을 이용하는 이유는 실질실효관세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혜관세율 (preferential tariff rate)이 적용되며, 특혜관세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MFN 실행관세율(applied MFN tariff rate)을 이용하여 계산됨으로써 각국 별로 적용받는 관세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¹⁴⁾

그리고 FTA 활용률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 FTA 발효대상국 수입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비율을 산업별로 계산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역되는 상품이 A, B, C 세 개의 품목만이 존재한다고 하자. 여기서 A, B품목은 FTA에서 양허되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C품목은 양허되지 않아 관세인하가 없다. 또한 A품목은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은 반면, B품목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FTA 활용률은 A, B품목의 총수입에서 A품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즉 [식 3-1]과 같이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¹⁵⁾ 물론 산업분류는 2장에서와 같이 ISIC3 2단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text{활용률}(\%) = \frac{\sum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sum \text{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 \quad \dots [\text{식 3-1}]$$

14) WITS의 TRAINS에서 관세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WITS의 WTO에서 제공하는 관세율을 사용한다.

15)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 계산 시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이던 품목과 미양허 품목은 제외하고 활용률을 계산한다.

2. FTA 관세율의 변화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에 따르면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많은 산업에서 관세율이 대체로 하락하였지만, 오히려 증가한 산업도 일부 있다.¹⁶⁾ 그리고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관세율 역시 감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산업도 발견된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관세율이 수입액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관세율로, 실질실효관세율이 0%가 아닌 경우에는 FTA로 실질실효관세율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FTA 발효 이후 실질실효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가중평균 관세율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축산업(01),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음식료품 제조업(15),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의 2009년 관세율은 각각 44.88%, 28.06%, 17.74%, 12.93%로 매우 높으며, 이 외 산업에서는 0%에서 한 자리 수준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¹⁷⁾

이상의 현상은 칠레의 대한민국 관세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산업에 따라 2004년 이후 가중평균 관세율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8~09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은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칠레의 대한민국 관세율은 제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하게 높게 유지되고 있어 양국의 교역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 TRAINS(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의 자료와 WTO(2003년, 2005년, 2008년)의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TRAINS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

17) 2009년에 비해 2007년에 0%의 관세율을 보인 산업들이 더 많다.

표 3-1.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45.10 | 45.43 | 44.40 | 44.90 | 32.80 | 29.19 | 44.88 | 44.88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84 | 4.99 | 0.67 | 6.59 | 5.43 | 1.06 | 8.00 | 8.00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8.03 | 28.54 | 2.68 | 28.07 | 1.89 | 1.49 | 28.06 | 28.06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 | - | - | 0.00 | - | - | - |
| 13 | 금속광업 | 1.00 | 1.00 | 0.00 | 1.00 | 0.00 | 0.00 | 0.00 | 0.00 |
| 14 | 기타 광업 | 3.00 | 3.05 | 0.00 | 3.00 | 0.00 | 0.00 | 3.00 | 3.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13.11 | 16.81 | 15.07 | 18.05 | 11.28 | 11.10 | 17.74 | 17.74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7.91 | 10.83 | 0.00 | 9.22 | 0.00 | 0.00 | 10.04 | 10.01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3.00 | 13.00 | - | 13.00 | 0.00 | 0.00 | 12.93 | 12.93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00 | 5.50 | 0.00 | 8.00 | 0.00 | 0.00 | 3.19 | 2.73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6.48 | 6.33 | 5.43 | 5.70 | 1.63 | 1.64 | 4.98 | 4.98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20 | 0.63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0 | 1.14 | 0.00 | 0.01 | 0.00 | 0.00 | 0.13 | 0.00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6.62 | - | - | - | - | 1.50 | 1.0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71 | 3.20 | 0.02 | 3.25 | 0.00 | 0.01 | 3.77 | 3.76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8.00 | 8.00 | 0.00 | 6.54 | 0.00 | 0.00 | 8.00 | 6.50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8.00 | 0.00 | 8.00 | 0.00 | 0.00 | 7.73 | 7.97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5.00 | 4.06 | 4.06 | 4.35 | 2.01 | 0.98 | 2.80 | 2.80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8.00 | 8.00 | 0.00 | 8.00 | 0.00 | 0.00 | 8.00 | 8.00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8.00 | 8.00 | 0.05 | 7.01 | 0.00 | 0.00 | 7.69 | 7.70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0 | 1.43 | 0.00 | 0.81 | 0.00 | 0.00 | 0.00 | 0.0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7.86 | 4.11 | 0.00 | 3.96 | 0.01 | 0.06 | 5.60 | 5.6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12 | 4.70 | 0.00 | 3.89 | 0.00 | 0.00 | - | 8.0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6.53 | 7.01 | 0.34 | 8.00 | 0.00 | 0.00 | 3.30 | 5.87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7.97 | 0.00 | 7.62 | 0.00 | 0.00 | 7.67 | 7.95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0.00 | - | - | 0.00 | - | - | -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 | 7.94 | 0.00 | 7.95 | 0.00 | 0.00 | 8.00 | 8.00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며 2003년, 2005년, 2008년 값은 WTO 자료임.

자료: WITS.

표 3-2. 칠레의 대한민국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7.00 | 6.00 | 6.00 | 6.00 | 0.21 | 0.00 | 0.00 | 6.00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7.00 | - | 6.00 | 6.00 | 0.00 | 0.00 | 0.00 | 6.00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7.00 | 6.00 | 6.00 | 6.00 | 4.50 | 0.00 | 0.00 | 6.00 |
| 13 | 금속광업 | - | - | - | - | 0.00 | 0.00 | 0.00 | 6.00 |
| 14 | 기타 광업 | 7.00 | 6.00 | 6.00 | 6.00 | 0.00 | 0.00 | 0.00 | 6.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4.88 | 0.13 | 0.32 | 6.00 |
| 16 | 담배 제조업 | - | - | - | - | 0.00 | - | - | -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2.01 | 1.80 | 1.54 | 6.0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3.70 | 3.74 | 3.31 | 6.00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4.42 | 4.10 | 3.61 | 6.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0.00 | 0.00 | 0.00 | 6.00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0.00 | 0.00 | 0.00 | 6.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6.81 | 5.78 | 5.77 | 5.95 | 2.13 | 1.44 | 0.74 | 5.65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6.00 | 6.00 | 0.92 | 6.0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0.82 | 0.99 | 0.53 | 6.00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3.70 | 3.70 | 2.50 | 6.00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3.28 | 2.43 | 1.53 | 6.00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3.28 | 3.48 | 2.86 | 6.00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3.81 | 2.87 | 2.10 | 6.00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2.76 | 2.44 | 2.11 | 6.00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7.00 | 0.61 | 6.00 | 6.00 | 0.51 | 0.15 | 0.08 | 6.0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7.00 | 5.93 | 6.00 | 6.00 | 3.13 | 2.70 | 2.20 | 6.0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00 | 5.95 | 6.00 | 6.00 | 2.10 | 0.06 | 0.03 | 6.0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0.49 | 0.27 | 0.20 | 6.0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0.69 | 0.70 | 0.66 | 6.00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7.00 | 2.01 | 2.02 | 6.00 | 0.37 | 3.68 | 3.15 | 6.00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7.00 | 6.00 | 6.00 | 6.00 | 1.29 | 1.24 | 0.83 | 6.00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자료: WITS.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 역시 2005년보다 FTA가 발효된 2006년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대한민국 관세율과 달리 여전히 많은 산업에서 양(+의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관세 수준이 증가하기도 하였다.¹⁸⁾

18) 싱가포르의 대한민국 관세율은 모든 분석기간의 모든 산업에서 0%이다.

특히 담배 제조업(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의 관세율은 FTA 발효 직후인 2007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산업 중 담배 제조업(16)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에서는 2007년 TSI 역시 하락해 FTA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것

표 3-3.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8.88 | 74.79 | 10.58 | 2.75 | 6.15 | 6.43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5.23 | 9.75 | 32.77 | 62.09 | 43.18 | 43.18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1.20 | 12.20 | 12.55 | 7.53 | 10.69 | 10.69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1.00 | - | 0.00 | 1.00 | 1.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5.00 | - | 3.00 | 3.00 |
| 13 | 금속광업 | - | 1.00 | 1.00 | 0.00 | 0.00 | 0.00 |
| 14 | 기타 광업 | 3.55 | 3.99 | 4.65 | 0.00 | 3.24 | 3.04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34.00 | 31.13 | 36.02 | 33.66 | 39.07 | 39.05 |
| 16 | 담배 제조업 | 40.00 | 40.00 | 40.00 | 13.00 | 40.00 | 4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9.00 | 9.01 | 8.86 | 2.32 | 9.69 | 9.66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55 | 12.59 | 12.58 | 7.81 | 12.81 | 12.81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7.09 | 8.53 | 7.69 | 0.09 | 6.76 | 6.76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7.69 | 7.31 | 7.81 | 5.58 | 7.94 | 7.9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02 | 0.00 | 0.00 | 0.00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96 | 0.64 | 1.09 | 0.00 | 0.01 | 0.00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68 | 4.99 | 5.24 | 2.37 | 7.90 | 3.99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4.98 | 5.08 | 5.13 | 3.65 | 5.00 | 4.86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7.23 | 7.15 | 7.06 | 3.67 | 7.44 | 6.81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99 | 7.95 | 7.96 | 0.56 | 5.31 | 5.31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4.52 | 4.34 | 5.05 | 0.52 | 3.96 | 4.02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55 | 7.83 | 7.70 | 1.76 | 7.47 | 7.50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50 | 6.16 | 6.55 | 2.19 | 7.37 | 7.09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1 | 0.01 | 0.02 | 0.00 | 0.06 | 0.06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6.70 | 6.59 | 6.49 | 2.28 | 6.06 | 6.02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11 | 0.09 | 0.07 | 0.27 | 0.26 | 0.3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29 | 4.81 | 5.01 | 2.24 | 5.17 | 5.05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12 | 7.72 | 7.45 | 3.48 | 7.72 | 7.73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23 | 0.18 | 0.83 | 0.00 | 1.18 | 1.31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5.93 | 5.35 | 3.70 | 1.21 | 5.65 | 5.67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며 2005년과 2008년 값은 WTO 자료임.

자료: WITS.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에서는 2007년에 TSI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앞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한국의 대EFTA 관세율에 따르면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과 같이 FTA

표 3-4. 한국의 대EFTA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20.97 | 17.25 | 81.00 | 100.87 | 7.91 | 7.91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73.25 | 174.96 | 176.30 | 8.41 | 176.63 | 176.63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0.00 | 19.96 | 20.00 | 19.98 | 19.99 | 19.99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1.00 | 1.00 | - | - | 1.00 | 1.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3.00 | 3.00 |
| 13 | 금속광업 | 1.00 | 1.00 | 1.00 | 0.00 | 0.00 | 0.00 |
| 14 | 기타 광업 | 2.30 | 2.28 | 2.27 | 0.00 | 2.41 | 2.41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13.25 | 15.35 | 15.21 | 11.72 | 16.40 | 16.41 |
| 16 | 담배 제조업 | 37.93 | 39.70 | 40.00 | 38.13 | 40.00 | 4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8.80 | 8.92 | 8.94 | 3.69 | 8.76 | 8.76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1.73 | 12.55 | 12.97 | 0.00 | 12.95 | 12.95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9.56 | 8.98 | 9.35 | 0.00 | 9.76 | 9.75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7.99 | 7.36 | 7.81 | 4.40 | 6.04 | 6.0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3 | 0.00 | 0.00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48 | 0.69 | 0.91 | 0.00 | 1.42 | 1.24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3.63 | 3.68 | 2.65 | 2.42 | 1.47 | 2.58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6.97 | 6.85 | 6.47 | 2.21 | 6.40 | 6.23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7.34 | 7.33 | 7.41 | 1.26 | 7.44 | 7.08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73 | 7.81 | 7.84 | 1.00 | 7.67 | 7.67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3.06 | 3.04 | 3.80 | 0.00 | 3.32 | 3.35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54 | 7.40 | 7.66 | 0.18 | 6.98 | 6.98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09 | 6.10 | 6.52 | 2.33 | 7.07 | 7.02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44 | 0.19 | 0.95 | 0.00 | 0.75 | 0.74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7.10 | 7.00 | 7.14 | 2.29 | 7.16 | 7.16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90 | 2.50 | 1.79 | 0.06 | 2.85 | 2.89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6.10 | 6.03 | 5.94 | 1.84 | 6.07 | 6.07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56 | 7.68 | 7.63 | 1.67 | 7.73 | 7.73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71 | 1.37 | 2.15 | 1.30 | 2.26 | 0.98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5.04 | 4.82 | 5.12 | 3.54 | 6.01 | 6.04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며 2005년과 2008년 값은 WTO 자료임.

자료: WITS.

발효 후 일부 산업에서 관세가 하락했고, 특히 TSI 하락이 컸던 산업 모두에서 관세가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실제 한국의 대EFTA TSI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에서 FTA 발효 직후 TSI 하락이 컸으며, 이들 산업의 관세율 역시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더불어 FTA 발효 직후 관세율 하락이 큰 산업인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에서도 TSI가 하락하였다. 단 관세율 하락이 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의 경우에만 TSI가 소폭 상승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EFTA의 대한민국 관세율에 따르면 EFTA는 2006년 이전에도 이미 한국에 낮은

■ 표 3-5. EFTA의 대한민국 관세율 ■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14 | 기타 광업 | - | 0.00 | 0.00 | 0.00 | 0.00 | 0.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0.00 | 0.00 | 0.11 | 0.00 | 0.00 | 0.03 |
| 16 | 담배 제조업 | - | - | - | 0.00 | - | 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00 | 0.00 | 1.48 | 0.00 | 0.00 | 0.0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00 | 0.00 | 3.02 | 0.00 | 0.00 | 0.00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00 | 0.00 | 0.14 | 0.00 | 0.00 | 0.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7 | 0.00 | 0.00 | 0.00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2 | 0.00 | 0.00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00 | 0.00 | 0.33 | 0.00 | 0.00 | 0.0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5 | 0.00 | 0.00 | 0.00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00 | 0.00 | 0.41 | 0.00 | 0.00 | 0.00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7 | 0.00 | 0.00 | 0.00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4 | 0.00 | 0.00 | 0.00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00 | 0.00 | 0.11 | 0.00 | 0.00 | 0.0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00 | 0.00 | 0.04 | 0.00 | 0.00 | 0.0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00 | 0.00 | 0.05 | 0.00 | 0.00 | 0.0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00 | 0.00 | 0.02 | 0.00 | 0.00 | 0.00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00 | 0.00 | 0.15 | 0.00 | 0.00 | 0.00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농축산업(01),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7),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의 경우 관세율이 0%로 표에서 삭제함.

자료: WITS.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었고, 관세율이 0%가 아닌 산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인 2007년 이후 모두 0%로 하락하였다. 즉 EFTA의 대한민국 관세율 변화가 크지 않아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ASEAN 관세율에 따르면 FTA 발효 연도인 2007년 관세율은

표 3-6. 한국의 대ASEAN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93.64 | 40.52 | 31.27 | 33.36 | 102.54 | 102.54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4.46 | 2.20 | 2.61 | 1.45 | 1.68 | 1.68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0.57 | 20.40 | 19.85 | 17.56 | 21.56 | 21.57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1.00 | 1.00 | 1.00 | 0.00 | 0.00 | 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2.81 | 2.84 | 2.68 | 1.79 | 1.86 | 1.86 |
| 12 | 우리늄 및 토륨 광업 | 1.00 | 1.00 | 1.00 | 0.00 | 0.00 | 0.00 |
| 13 | 금속광업 | 1.00 | 1.00 | 1.00 | 0.00 | 0.00 | 0.00 |
| 14 | 기타 광업 | 4.10 | 3.89 | 4.00 | 1.47 | 3.41 | 3.41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18.23 | 18.60 | 21.57 | 22.64 | 17.99 | 18.02 |
| 16 | 담배 제조업 | 36.38 | 38.75 | 38.09 | 12.01 | 39.83 | 39.83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8.42 | 8.42 | 8.45 | 5.23 | 8.57 | 8.57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75 | 12.42 | 12.08 | 8.02 | 12.44 | 11.24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1.21 | 11.60 | 11.64 | 6.49 | 11.26 | 11.18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7.22 | 7.28 | 7.28 | 5.03 | 5.83 | 5.80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07 | 0.80 | 1.32 | 0.00 | 0.03 | 0.01 |
| 23 |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97 | 5.00 | 5.26 | 3.13 | 2.12 | 3.53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4.59 | 4.55 | 4.50 | 3.47 | 4.70 | 4.53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7.49 | 7.45 | 7.40 | 3.94 | 7.37 | 6.92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93 | 7.90 | 7.91 | 2.55 | 6.83 | 6.89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2.91 | 3.28 | 3.58 | 0.78 | 2.37 | 2.53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32 | 7.01 | 7.10 | 1.81 | 6.62 | 6.64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06 | 6.78 | 7.03 | 2.75 | 7.42 | 7.26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2 | 0.03 | 0.03 | 0.02 | 0.25 | 0.24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6.61 | 6.65 | 6.35 | 2.82 | 5.80 | 5.78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64 | 0.57 | 0.55 | 0.69 | 2.12 | 2.11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93 | 5.73 | 5.65 | 2.12 | 5.36 | 5.34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58 | 7.84 | 7.78 | 4.09 | 7.90 | 7.90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76 | 0.46 | 0.85 | 0.50 | 1.65 | 1.66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5.03 | 4.76 | 4.66 | 2.29 | 4.99 | 4.99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며 2005년과 2008년 값은 WTO 자료임.

자료: WITS.

2006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08~09년에는 오히려 관세율이 증가한 산업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업(1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 등의 관세율은 2007년에 5%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관세율이 하락한 산업 중 한국의 대ASEAN TSI가 감소한 산업은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으로, 이들 산업의 경우 FTA에 따른 관세하락이 한국의 대ASEAN 수입을 증가시켜 상품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담배 제조업(16)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의 경우에는 TSI가 2007년에 오히려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ASEAN의 대한국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FTA 발효 이전보다 2007년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광업(10),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에서 관세율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금속광업(13),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에서는 관세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 중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의 경우 한국의 대ASEAN 관세율, ASEAN의 대한국 관세율, 한국의 대ASEAN TSI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에서 ASEAN의 대한국 관세하락이 한국의 대ASEAN 관세하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ASEAN TSI가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의 경우에도 ASEAN의 대한국 관세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경쟁력이 상승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7. ASEAN의 대한국 관세율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3.14 | 4.98 | 5.88 | 5.39 | 5.19 | 1.73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4.68 | 5.06 | 4.50 | 2.91 | 3.63 | 2.36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08 | 1.69 | 4.40 | 3.23 | 10.67 | 2.81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4.96 | 0.97 | 4.01 | 0.07 | 0.00 | 0.01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 | 0.00 | 0.13 | 0.01 | 0.00 | 0.00 |
| 13 | 금속광업 | 0.75 | 0.00 | 0.00 | 2.65 | 0.01 | 0.01 |
| 14 | 기타 광업 | 5.35 | 4.60 | 1.56 | 1.38 | 0.78 | 0.35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18.65 | 12.81 | 12.00 | 11.03 | 8.96 | 9.44 |
| 16 | 담배 제조업 | 20.78 | 16.98 | 16.44 | 11.34 | 16.77 | 8.23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21.79 | 19.76 | 21.09 | 20.01 | 10.21 | 2.42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1.63 | 31.41 | 34.57 | 29.98 | 20.19 | 1.65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0.20 | 10.49 | 8.26 | 7.50 | 9.18 | 0.97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5.72 | 6.74 | 6.81 | 5.86 | 6.94 | 1.9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7.03 | 7.02 | 7.32 | 7.46 | 7.04 | 1.63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12 | 6.95 | 6.42 | 5.49 | 0.79 | 2.07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72 | 6.23 | 5.89 | 2.52 | 2.32 | 0.94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3.41 | 4.33 | 4.01 | 3.36 | 2.69 | 2.10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1.69 | 13.99 | 14.62 | 13.77 | 9.42 | 6.68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6.69 | 11.50 | 10.93 | 8.60 | 8.08 | 3.71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5.45 | 8.82 | 8.14 | 8.66 | 6.05 | 6.53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04 | 8.81 | 9.16 | 8.20 | 8.06 | 5.47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70 | 3.16 | 3.21 | 2.47 | 2.38 | 1.68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24 | 0.28 | 0.26 | 0.13 | 0.46 | 0.06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4.45 | 4.87 | 5.19 | 3.69 | 4.27 | 2.31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56 | 0.50 | 0.52 | 0.37 | 1.25 | 1.03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16 | 1.58 | 1.33 | 1.80 | 1.34 | 0.62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1.30 | 26.57 | 21.58 | 17.06 | 19.28 | 14.27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4.03 | 5.63 | 3.36 | 0.85 | 0.99 | 0.30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14.38 | 13.19 | 13.30 | 12.12 | 15.85 | 3.40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자료: WITS.

3. FTA 활용률

한·칠레 FTA의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농축산업(01),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기타 광업(14), 음식료품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27)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FTA를 활용한 수입이 많다는 것으로, 그 수입품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활용률이 높을수록 TSI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산업 중 음식료품 제조업(15)에서만 TSI 하락이 나타났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TSI가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기중평균 관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칠레에서 많은 수입을 하는 1차 금속 제조업(27)의 활용률은 FTA 발효 직후인 2005년 91.1%로 매우 높았으나 2006년 70.7%, 2007년 63.3%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2008년과 2009년 각각 94.2%와 93.0%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산업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인 이유는 칠레를 제외한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5%대로 높고, FTA 발효로 인해 칠레에 적용되는 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칠레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산업 중 하나인 금속광업(13)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이는 칠레를 제외한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칠레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0% 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싱가포르 FTA의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등으로 많지 않으며, 이들 산업에서의 수입 역시 적은 편이다. 이들 산업 중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의 경우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의 대싱가포르 TSI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19) 금속광업(13)과 1차 금속 제조업(27)이 한국의 대칠레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대로 매우 높다.

표 3-8. 한국의 칠레 FTA 활용률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87.54 | 79.89 | 82.62 | 78.92 | 90.31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55.46 | 89.69 | 100.00 | 98.59 | 99.91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92.82 | 95.32 | 91.27 | 92.10 | 99.84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0.00 | - | - | - |
| 13 | 금속광업 | 16.78 | 4.29 | - | - | - |
| 14 | 기타 광업 | 100.00 | 98.05 | 100.00 | 99.83 | 99.93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94.55 | 96.25 | 92.13 | 94.48 | 94.57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00 | 22.67 | 19.77 | 0.00 | 0.0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00 | 0.00 | 1.53 | 0.00 | 0.00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0.00 | 0.00 | 53.55 | 92.97 | 0.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94.45 | 60.42 | 97.70 | 99.26 | 99.34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00 | 1.49 | 100.00 | 10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9.34 | 0.00 | 0.00 | 0.00 | -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 - | 100.00 | 0.0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85.98 | 83.19 | 94.57 | 96.38 | 93.70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0.00 | 91.15 | 90.68 | 34.84 | 0.00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57.87 | 0.00 | 42.52 | 3.58 | 4.54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91.05 | 70.66 | 63.25 | 94.19 | 93.00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73 | 0.82 | 12.08 | 99.94 | 0.46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99.26 | 86.75 | 0.00 | 24.36 | 0.00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0.00 | 0.00 | 0.00 | 2.65 | 0.00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5.97 | 0.00 | 0.00 | 0.00 | 0.00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0.00 | - | - | -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1.79 | 0.00 | 0.00 | 6.40 | 17.07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활용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한편 싱가포르에서 많은 수입을 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사무용기계제조업(30),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에서는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수입을 많이 하는 산업에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사무용기계 제조업(30),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의 경우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9. 한국의 싱가포르 FTA 활용률

(단위: %)

| 코드 | 산업명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01 | 농축산업 | 0.00 | 3.35 | 1.90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 | 0.00 | 0.00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0.00 | 0.00 | 0.00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0.00 | 0.00 | -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0.00 | - |
| 13 | 금속광업 | - | - | - |
| 14 | 기타 광업 | 0.00 | 0.00 | 0.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22.79 | 7.72 | 3.54 |
| 16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0.04 | 0.00 | 0.0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3.68 | 0.43 | 0.00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74.14 | 51.48 | 83.41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8.44 | 52.36 | 53.93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00 | 0.48 | 0.00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00 | 0.00 | 0.00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0.00 | 0.00 | 8.1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3.42 | 12.14 | 14.73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5.44 | 3.14 | 1.67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81.72 | 66.19 | 76.11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4.64 | 0.74 | 2.65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9.42 | 3.13 | 1.34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3 | 2.84 | 1.82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0.00 | 0.03 | 0.0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1.28 | 22.73 | 16.24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0.21 | 0.00 | 0.00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6.48 | 11.92 | 0.01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84 | 5.72 | 13.28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77 | 0.00 | 0.03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0.00 | 0.00 | 0.00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활용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EFTA의 경우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02),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05),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에서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20)의 경우 한국의 대EFTA 관세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SI가 등락을 반복하는 것과 달리 나머지 세 개 산업은 2009년의 관세율이 2006년에 비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SI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33)의 활용률은 여타 FTA에서와 유사하게 낮은 활용률을 보인다. 이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4)은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가 많아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표 3-10. 한국의 EFTA, ASEAN FTA 활용률

(단위: %)

| 코드 | 산업명 | EFTA | | | ASEAN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 01 | 농축산업 | 0.00 | 0.00 | 0.00 | 22.38 | 21.32 |
| 02 |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 80.22 | 92.29 | 97.41 | 49.12 | 54.36 |
| 05 | 어로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99.56 | 99.98 | 99.89 | 33.26 | 48.17 |
| 10 | 석탄광업, 이탄 채굴업 | - | 0.00 | 0.00 | 0.00 | 0.00 |
| 11 |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0.00 | 0.00 | 59.41 | 55.27 |
| 13 | 금속광업 | - | - | - | - | - |
| 14 | 기타 광업 | 46.08 | 74.08 | 61.61 | - | -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64.60 | 65.57 | 60.96 | 64.85 | 68.52 |
| 16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54.79 | 55.75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77.51 | 80.99 | 87.34 | 98.42 | 91.07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81.69 | 84.83 | 85.53 | 71.99 | 83.39 |
| 19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4.03 | 64.13 | 78.48 | 52.26 | 70.32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7.24 | 91.83 | 93.48 | 53.16 | 68.86 |
|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4 | 58.89 | 43.27 | 15.82 | 18.19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6.07 | 81.87 | 75.49 | 5.98 | 0.70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39.95 | 95.02 | 21.93 | 38.12 | 77.40 |
| 2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5.54 | 70.05 | 64.40 | 9.10 | 4.12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7.96 | 49.69 | 21.72 | 33.15 | 42.47 |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33.74 | 31.46 | 33.02 | 32.73 | 40.15 |
| 27 | 1차 금속 제조업 | 89.08 | 87.07 | 60.78 | 45.20 | 43.94 |
| 2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3.63 | 9.86 | 11.67 | 62.23 | 82.19 |
| 29 |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0.42 | 26.76 | 20.49 | 32.43 | 33.09 |
| 30 | 사무용기계 제조업 | 25.40 | 67.20 | 84.52 | 11.59 | 12.40 |
| 31 |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 12.89 | 21.93 | 18.64 | 2.09 | 3.86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56 | 26.81 | 16.16 | 12.56 | 19.24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47.08 | 61.00 | 60.32 | 51.79 | 52.16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4.81 | 38.57 | 30.27 | 27.33 | 33.67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83.77 | 63.07 | 32.51 | 3.16 | 1.71 |
| 36 |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조업 | 59.88 | 71.90 | 87.73 | 0.83 | 5.39 |

주: 자료가 없는 것은 수입이 없어 활용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임.

판단된다.

ASEAN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에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산업들 중 섬유제품 제조업(1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의 경우는 TSI의 하락이 보이는 반면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8)에서는 소폭이나마 TSI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SEAN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과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역시 비교적 낮은 FTA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11)의 경우 모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활용률이 0%였으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은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거나 처음부터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않아 낮은 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관세율의 경우 한국과 FTA 발효국 간 실질실효관세율은 대체적으로 발효 이후 낮아졌으나 일부 산업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관세율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TA 상대국과의 관세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경쟁력 변화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의 경우,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은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칠레의 대한국 관세율은 제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양국의 교역구조가 FTA로 인해 크

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 한국의 대싱가포르 및 대EFTA 관세율 역시 FTA 발효 이후 큰 폭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단 ASEAN의 대한국 관세율은 FTA 발효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대 ASEAN 수출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이 변화하였지만 이 산업들 모두에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 하락이 TSI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세율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한 다수의 산업에서 TSI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세율과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도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EFTA 및 ASEAN의 경우 활용률이 높은 산업에서 한국의 대발효국 T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각 FTA 발효대상국별로 수입이 많은 산업에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입규모가 큰 산업에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WTO 협정세율 혹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FTA 상대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는 상품경쟁력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즉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수출입 변화에 영향을 주어 상품경쟁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시 상품경쟁력은 TSI만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MCA가 동일 국가의 산업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정 산업의 MCA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산업의 MCA는 낮아지게 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계산한 MCA의 경우 수출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FTA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기존 연구로는 김미아(2008), 박혜진, 김기홍(2009), 최용제(2010)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칠레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즉 [식 4-1]과 같은 수출함수를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분석했다.

$$\ln EX_t = \alpha + \beta_1 \ln GDP_t + \beta_2 \ln ER_t + \beta_3 FTA_t + \epsilon_t \dots \dots \text{[식 4-1]}$$

여기서 EX 는 한국의 대칠레 수출을, GDP 는 칠레의 GDP를, ER 는 원/달러 환율을,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FTA 는 한국과 칠레의 FTA 더미변수로 2004년 이전은 0, 2004년을 포함한 이후 기간은 1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ϵ_t 는 독립동일분포를 가지는 오차항이다($\epsilon_t \sim i.i.d(0, \sigma_\epsilon^2)$).

이 연구에서는 수출입에 의해 계산되는 TSI를 종속변수로 하기 때문에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식 4-1]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인 국가간 거리 및 수출국의 GDP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들 변수는 중력모형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국가간 교역량을 추정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식 4-1]은 패널모형이 아니므로 이를 패널모형으로 확장하면 [식 4-1]은 [식 4-2]와 같이 변경된다.

$$TSI_{ijkt} = \alpha + \beta_1 \ln GDP_{it} + \beta_2 \ln GDP_{jt} + \beta_3 \ln DIST_{ij} + \beta_4 \ln ER_{it} + \beta_5 FTA_{ijt} + v_{ijk} + \omega_t + \epsilon_{ijkt} \dots \text{[식 4-2]}$$

여기서 TSI_{ijk} 는 기준국가 i 의 FTA 대상국 j 에 대한 k 산업의 TSI, GDP_i 는 기준국가 i 의 GDP, GDP_j 는 FTA 대상국 j 의 GDP, $DIST_{ij}$ 는 국가 i 와 j 간의 거리, ER_i 는 국가 i 의 대미환율, FTA_{ij} 는 FTA 더미변수로 FTA 발효 이전은 0, 이후는 1의 값을 갖는다. v_{ijk}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기준국 i 의 대상국 j 에 대한 산업 k 의 특성을 의미하며, ω_t 는 기준국, 대상국, 산업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준국이 한국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GDP_{it} 와 ER_{it} 는 각각 한국의 GDP와 원/달러 환율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 인해 두 변수는

ω_t 와 같이 FTA 대상국과 산업에 의해 변하지 않는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상의 세 변수 중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환율을 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v_{ijk} 역시 v_{jk} 로 변경되므로 이를 정리하면 [식 4-3]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begin{aligned}
 TSI_{jkt} = & \alpha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ER_t \\
 & + \beta_4 FTA_{jt} + v_{jk} + \epsilon_{jkt} \quad \dots\dots\dots [\text{식 4-3}]
 \end{aligned}$$

즉 [식 4-3]의 β_4 의 값이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친 효과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식 4-3]은 분석모형에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FTA 더미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있어 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식 4-4]와 같이 FTA 더미 대신 한국과 FTA 발효대상국의 관세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begin{aligned}
 TSI_{jkt} = & \alpha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ER_t \\
 & + \beta_4 T_{kt} + \beta_5 T_{jkt} + v_{jk} + \epsilon_{jkt} \quad \dots\dots\dots [\text{식 4-4}]
 \end{aligned}$$

여기서 T_k 는 한국의 대발효국에 대한 산업별 가중평균 관세율, T_{jk} 는 각 발효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산업별 가중평균 관세율을 의미한다.

즉 [식 4-3]과 [식 4-4]를 실증분석함으로써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때 분석방법은 패널자료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활용하고, ISIC3 2단위 산업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기간은 2002~09년까지로 하였다.

2002~09년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상품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인 [표 4-1]에 따르면, FTA로 인해 상품경쟁력이 10%의 유의수준에서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세율 변화만을 보았을 때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제3장에서 나타나듯 일부 산업의 경우 한국과 칠레 간의 관세율, 한국의 대싱가포르 관세율, 한국의 대EFTA 관세율, 한국과 ASEAN 간의 관세율이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FTA 협정문에는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관세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사용된 관세율은 수입액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기중평균한 관세율로 세부 품목별 실질실효관세가 하락하여도 상대적으로 실질실효관세가 높은 품목에서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오히려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외 독립변수 중 한국 상품의 수요를 의미하는 FTA 대상국 GDP의 경우 그 크기가 클수록 구매력 증가로 인해 한국의 FTA 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과 달리 10%의 유의수준에서 한국의 상품

▣ 표 4-1. 상품경쟁력 분석: 2002~09년 ▣

| | 식 4-3 | 식 4-4 |
|----------------|------------------|-----------------|
| $\ln GDP_{jt}$ | -0.13 (0.07)* | -0.09 (0.06) |
| $\ln DIST_j$ | -0.04 (0.14) | 0.04 (0.15) |
| $\ln ER_t$ | 0.06 (0.07) | -0.10 (0.08) |
| FTA_{jt} | 0.01 (0.01)* | - |
| T_{kt} | - | 0.19 (0.16) |
| T_{jkt} | - | 0.33 (0.29) |
| 상수항 | 3.66 (2.60) | 1.90 (2.36) |
| 관측치 수 | 897 | 796 |

주: 1)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2)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리와 환율 변화는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한성 외(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모형 [식 4-3]과 [식 4-4]에 활용률을 포함한 [식 4-5]와 [식 4-6]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다시 추정하였다.

$$TSI_{jkt} = \alpha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ER_t + \beta_4 FTA_{jt} + \beta_5 U_{jkt} + v_{jk} + \epsilon_{jkt} \quad \dots\dots\dots [식 4-5]$$

$$TSI_{jkt} = \alpha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ER_t + \beta_4 T_{kt} + \beta_5 T_{jkt} + \beta_6 U_{jkt} + v_{jk} + \epsilon_{jkt} \quad \dots\dots\dots [식 4-6]$$

여기서 U_{jkt} 는 상품 k 별 한국의 FTA 발효대상국(j)에 대한 활용률을 의미한다.

분석모형 [식 4-5]와 [식 4-6]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4-2]에 따르면, [식 4-5]의 경우 유의수준 1% 내에서 FTA 발효 후 FTA에 따른 수입활용률이 증가하면 TSI가 낮아져 상품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의 효과는 유의한 양(+)으로 추정되어 FTA 발효가 상품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식 4-6]의 경우 활용률은 유의수준 10% 내에서 음(-)으로 추정되어 [식 4-5]에서와 동일하게 활용률이 증가하면 상품경쟁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은 유의수준 10% 내에서 음(-)으로 추정되어 [식 4-5]에서와 달리 FTA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발효국 TSI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식 4-4]에서와 같이 이 분석에 사용된 관세율이 가중평균 관세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외 독립변수 중 FTA 대상국의 GDP는 음(-)으로, 거리 및 환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FTA의 효과를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FTA의 효과를 관세율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였으며, 발효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활용률 증가가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다.

▮ 표 4-2. 상품경쟁력 분석: FTA 발효 이후 ▮

| | 식 4-5 | 식 4-6 |
|----------------|--------------------|------------------|
| $\ln GDP_{jt}$ | -0.15 (0.07)** | -0.10 (0.06) |
| $\ln DIST_j$ | -0.09 (0.14) | -0.01 (0.15) |
| $\ln ER_t$ | 0.00 (0.08) | 0.04 (0.08) |
| U_{jkt} | -0.17 (0.05)*** | -0.09 (0.05)* |
| FTA_{jt} | 0.02 (0.01)*** | - |
| T_{kt} | - | -0.07 (0.04)* |
| T_{jkt} | - | -0.17 (0.27) |
| 상수항 | 4.80 (2.46)* | 2.86 (2.42) |
| 관측치 수 | 442 | 359 |

주: 1)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분석모형에서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FTA 협상 시 상품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 관세인하를 높게 하고, 낮은 산업에서 관세인하를 낮게 하였을 것이므로 관세율이 상품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상품경쟁력 역시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5장

결론

이 연구는 FTA가 발효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품경쟁력 변화 정도를 기존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무역 특화지수(TSI)와 시장비교우위지수(MCA)로 이용하였다. 아울러 각 FTA별 상품경쟁력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FTA 발효 이후 관세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출합수를 확장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TSI 및 MCA의 변화가 크지 않아 FTA가 한국의 대칠레 상품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FTA 발효 이후 다수의 산업에서 TSI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상싱가포르 및 대EFTA 상품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ASEAN FTA는 FTA 발효 이후 다수의 산업에서 TSI 및 MCA가 변화한 것으로 나

타나 한국의 대ASEAN 상품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게 나타나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의 경우 한국의 대칠레 관세율은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칠레의 대한국 관세율은 제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양국의 교역구조가 FTA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싱가포르 및 대EFTA 관세율 역시 FTA 발효 이후 큰 폭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단 ASEAN의 대한국 관세율은 FTA 발효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대ASEAN 수출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한 다수의 산업에서 TSI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EFTA 및 ASEAN의 경우 활용률이 높은 산업에서 한국의 대발효국 T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단 이들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 하락이 한국의 대발효국 TSI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세율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고, 관세율과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

한편 각 FTA 발효대상국별로 수입이 많은 산업에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입규모가 큰 산업에서 낮은 활용률을 기록한 이유는 WTO 협정세율 혹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FTA 상대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FTA의 효과를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FTA의 효과를 관세율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였으며, 발효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활용률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FTA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FTA 추진 시 모든 산업에서 상품경쟁력 향상을 항상 기대할 수는 없다. 제2장에서 나타났듯이 FTA가 발효된 이후 일부 산업에서는 상품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가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FTA 조기추진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 추진을 가속화하여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 나타났듯 1차 광물 수입이 많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여타의 FTA 활용률은 60%를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20%에 그치고 있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 FTA 활용률 향상은 상품경쟁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 그만큼 FTA를 활용하여 원자재 및 중간재 조달가격을 낮추어 국내 생산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경쟁에 따른 물가인하 효과와 다양한 선택의 폭 확장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직접

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FTA 활용률 제고는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입규모가 큰 산업에서 나타나는 낮은 활용률이 WTO 협정세율 혹은 할당관세 적용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면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은 이 연구에서 나타난 상품경쟁력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후생증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단순히 상품경쟁력 변화만을 목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FTA 추진 시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준구 · 박지현. 2004. 『한국 · 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 분석』. FTA 연구시리즈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철우 · 전봉걸. 2008.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328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미아. 2008.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pp. 47~63.
- 김한성 외. 2009.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9-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혜진 · 김기홍. 2009. 『한국 IT제조업에 있어서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탄력성분석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3호, pp. 25~53.
- 송승이. 2011.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IIT Trade Focus』, Vol. 10, No. 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양준석 · 김홍률. 2002. 『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정책연구 02-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 칠레 FTA의 주요내용』.
- _____. 2005a. 『한 ·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_____. 2005b. 『한 · EFTA FTA의 주요내용』.
- _____. 2007. 『한 · ASEAN FTA 주요내용 - 기본협정 · 분쟁해결제도협정 · 상품무역협정』.
- 조미진 · 박지현. 2009. 『한 · 칠레 FTA 발효 5주년 평가: 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 『KIEP 지역경제포커스』, 9-4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용제. 2010. 『한-칠레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pp. 541~556.
- 한국무역협회. 2007. 『한-EFTA FTA 발효 1년 수출입 동향분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 황윤진. 2006. 『주요 교역상대국간 한국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측정: 한국 산업의 유형별 산업내 무역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연계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2권 2호, pp. 71~98.

● ● 영문자료

- Kang, Sung Jin, Yasuyuki Sawada, and Seong-Hun Yun. 2004.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OK Institute Working Paper, No. 191.

●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 WITS. <http://wits.worldbank.org/wits>
- World dataBank WDI. <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

Analyses on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 Under Effective FTAs

Hankyong Sung, Hyuk-Hwang Kim, and Hyeyoon Keum

This paper studies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 measured by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Chile, Singapore,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 and ASEAN. Additionally, it analyses the trend in change of tariff under the FTAs to show how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products are related with those, and measures usage rate of FTAs' benefit from the lowered tariff lines the agreements.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 of FTA to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 using a panel model, which is originated from export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TA with Chile may not lead substantial changes in competitiveness to Korean products, but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did. In addition, due to the relatively small changes in tariff after FTAs, the effect from the lowered tariff would be negligible, and there is no evident relations between the usage rate and TSI. Last,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es, the effectuation of FTAs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but surprisingly the lower Korean tariff lines would result in more competitiveness and it even turns out that

more usage on lowered tariff worsen competitiveness of product.

From the abo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pursue more FTA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and second, more effort would be required to raise usage rate on FTAs' benefit from the lowered tariff. Third, comprehensive approaches that consider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welfare improvement of entire economy should be emphasized.

KIEP 무역투자연구시리즈 발간자료 목록

- 2011년
 - 11-0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 · 김혁황 · 금혜윤
- 2010년
 - 10-01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박노형 · 박성훈
 - 10-02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조미진 · 김민성
- 2009년
 -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 09-02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송영관
- 2008년
 - 08-01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정지원 · 박혜리
 -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 2007년
 -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성한경(成翰旻)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국제통상과 교수

(現, E-mail: hksung@kookmin.ac.kr)

저서 및 논문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공저, 2010)

『한·인도 CEPA 이후 대(對)남아시아 통상정책』(공저, 2010) 외

김혁황(金赫璜)

송실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h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공저, 2009)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공저, 2010) 외

금혜윤(琴惠允)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시아-태평양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0)

『포스트고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공저, 2010)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 A | (계간)대외경제연구 | 1만 5천 원 | | 1만 2천 원 |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 일체 | A 계간지 |
|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alyses on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 Under Effective FTAs

Hankyong Sung, Hyuk-Hwang Kim, and Hyeyoon Keum

본 연구는 FTA가 발효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FTA를 대상으로 상품경쟁력 · 관세율 · 활용률 변화정도를 비교하고,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품경쟁력은 싱가포르, EFTA, ASEAN과 체결한 FTA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TA에 따른 관세율 변화 및 활용률과 상품경쟁력 간의 명확한 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FTA 더미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전략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2304-9
978-89-322-2112-0(세트)

정가 5,000원